운영규정의 개요

1. 이용대상

재가 서비스 이용대상	-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- 65세 미만 노인성질환(치매, 뇌졸중, 파킨슨 등)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-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2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월 이용료

-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를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에 의거 보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%,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%, 6%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.

재가 서비스 표준수가 (2026년)

- 월 본인한도액(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) - (원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한도액(원)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-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- (원)

제공 시간	30분 이상	60분 이상	90분 이상	120분 이상	150분 이상	180분 이상	210분 이상	240분 이상
수가	17,450	25,320	34,120	43,430	50,640	57,020	63,530	70,080

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가(이) 전액 부담한다.

3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서비스의 내용

-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나 신원인수인의 욕구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.

서비스 제공 불가 영역

-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하며,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,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,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장기요양보험법상(제28조의2) 금지되어 있음.

비용의 부담

-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,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